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40
----------	----

제안년월일 : 1999. 2. 25.
발의자 : 이종해의원외 4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사가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2. 주요골자

가. 구정질문 및 답변

- 기간 : '99. 3. 5 ~ '99. 3. 6 (2일간)
-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